

제64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① 이사회 개최 개요

- 일 시 : 2023. 8. 22.(화) 14:00 ~ 15:00
- 참여인원 : 총17명 중 13명 참석(이사 12명, 감사 1명)
 - ▶ 참석(이사): 이성운, 이정숙, 강정미, 김영구, 김영애, 김종숙, 민화식
신영철, 조성제, 차현주, 한규석, 한태섭
 - ▶ 참석(감사): 송태승
- 회의진행
 - ▶ 사회자 : (재)안산문화재단 기획감사실장
 - ▶ 회의주재 : (재)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
 - ▶ 심의안건 제안설명 : (재)안산문화재단 기획감사실장
 - ▶ 안건심의 및 의결 : 참석이사 전원
 - ▶ 폐회 : 참석이사 전원

② 이사회 개최 내용

- 심의안건 : 4건
 - 의안제2023-19호: 2023년 제3회 자체 추가경정예산(안)
 - 의안제2023-20호: 예비비 편성(안)
 - 의안제2023-21호: 보수 및 인사관련 규정·규칙 일부개정(안)
(보수규정, 임원인사규정, 인사규정 시행규칙)
 - 의안제2023-22호: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- 보고안건 : 3건
 - 제63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
 - 제76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
 - 제77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

3 안건 심의 결과

○ 의안제2023-19호 2023년 제3회 자체 추가경정 편성예산 심의 건 : 원안가결

- ▶ 주요내용 : 2023년 추가수입·지출(보조금) 편성 및 지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안산문화재단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따라 제3회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고자 함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2023년 경정액 | 2023년 기정액 | 증감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수 입 | 12,916,458 | 12,839,458 | 77,000 |
| 지 출 | 12,916,458 | 12,839,458 | 77,000 |

- 신규 국고 보조금 사업전정 : 77,000천원

(김홍도미술관) 경기예술지원 창작지원<생생화회(生生化化)전> : 46,000천원 / 경기문화재단 (시민축제부)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: 31,000천원 / 경기도

- 지출예산조정으로는

- 이사회 구성인원 증가 및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등에 따라 타 부서 예산 낙찰 차액금 등을 감액하여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2천1백4십만원 증액 편성,
- 김홍도미술관은 수선유지비를 감액하여 전기요금 4천6백만원을 증액편성
- 공연기획부 방방곡곡문화공감 투어공연 신규사업 등으로 7천1백만원을 예산조정

○ 의안제2023-20호 예비비 편성 심의 건 : 원안가결

- ▶ 주요내용 : 재단 회계규정 제18조에 재무관리부(부가가치세 40,000천원 증액편성), 공연예술부(음향스피커 8IN/16OUT 2대, 4IN/8OUT 1대 / 49,995천원) 구입을 위한 예비비 편성 하고자 함.

- [재무관리부]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용역비에 대해 안분계산 후 납부세액 결정. 2022년 9월 시설·청소용역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비(대략 14억) 감소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또한 감소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증가
- [무대예술부] 공연장에서 사용중인 스피커 프로세서는 2005년 구입한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2배 이상 경과됨. 부품 단종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, 보유한 대체품이 없음

○ **의안제2023-21호 보수 및 인사관련 규정규칙 일부개정 심의 건 : 원안기결**

- ▶ 개정이유 :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안산시 감사관 종합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며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

▶ 주요내용

| 규정명 | 개정조항 | 개정 내용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보수규정 | 제13조(보수의 금액) | - 정직 시 보수 미지급 |
| | 제17조의2 (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지급) | - 징계 등 취소(무효) 시 보수의 소급 지급 |
| | 제24조(가족수당) | - 가족수당 상향 조정 |
| | 제29조(성과급) | - 경영평가 통지 후 3개월 내 지급 - 중징계 등 처분 시 미지급 |
| | 제32조(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) | - 임원 채용비리 등 해임 경우 1/2 금액 지급 |
| | [별표3] 경력환산표 | - 경력 환산 대상 구체화 |
| | [별표6] 수당 금액 지급구분표 [별표7] 수당지급 기준표 | - 정직 기간 중 수당 100% 금액 - 공무원 파견수당 하향 조정 |
| 임원 인사규정 | 제22조(징계의 시효) | - 채용비리 징계시효 변경 |
| 인사규정 시행규칙 | 제15조(구비서류) | - 채용신체검사서 대체 서류 변경 |
| | 제17조(친인척 공개) | - 신규채용직원 친인척 공개 범위 정비 |

○ **의안제2023-22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심의 건 : 원안기결**

- ▶ 개정사유 :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에 따른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 사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

▶ 주요내용

- ①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·서식 삭제
 -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(안 제5조) 외 7개 조항
 - 조항 삭제에 따른 서식 삭제(안 별지 제3호 ~ 9호, 13호)
- ②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개념 명확화
 - 제21조의2 조항 문구 중 ‘전가’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‘전가(轉嫁)’로 한자 병행 표기
- ③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 (별표 2)